

—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12월 18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12월 22일

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새마을과장 강 대 원

나. 제안이유

- 2001. 8. 1일부터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있어 현재
운용중인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.

다. 주요내용

【 조항신설 】

-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
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같다(제9조)
- 1인 2종목이상 신청시 사용료 할인(제10조제5항)

【 내용변경 】

- 생활보호대상자 ⇒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제10조제2항)
- (별표1)
 - 수영장 사용료에 단체회원사용료 추가
 - 사용일수(월~토) ⇒ 사용일수(월~일)
 - 용어의 <정의> 추가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금년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1인 2종목이상 신청시에 할인제도를 도입하고
- 수영장 사용료에 단체회원 사용료를 타조례와 같이 신설하되 사용일수(월~토)를 사용일수(월~일)로 조정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현실적인 개정안임.
- 제9조(사용허가)중 국민생활관 시설을 “이용”하고자 하는 자는 “사용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 용어의 통일을 함이 바람직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